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동중재전문교사 등 배치 근거 마련〉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80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2.
3. 회부연월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상의 문제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 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이하 “행동중재전문교사”라 함)을 두고 행동중재전문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동중재전문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8조의2(행동중재전문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이하 “행동중재전문교사”라 한다)을 둔다.</u> <u>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u> <u>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u>

	<u>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 교사의 자격, 업무 및 배치,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행동중재’란 행동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과 환경을 파악하여 학생, 가족,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행동의 원인을 개별학생이 가진 문제로 국한하기보다 학생을 둘러싼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을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 수준과 형태로 문제행동이 개선될 때까지 학생에게 사회적·환경적·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최근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 진단기준 완화 및 영유아발달검사 수검 인원 급증 등으로 인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특히 행동중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적·자폐성장애 학생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4. 4.) >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수	92,958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수	49,624	50,693	51,788	53,718	55,867	57,883
자폐성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수	13,105	13,917	15,215	17,024	19,275	22,194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생 비율	67.5	67.7	68.3	68.2	68.5	69.3

자료: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2023.12.)」 및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이에 개정안은 행동중재전문교사와 지원인력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두도록 하는 등 행동중재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행동중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최근 행동중재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부터 권역별 거점행동중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24. 8.5개 센터)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중재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¹⁾.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 교원·교육전문직·교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행동중재지원단('23.12. 102개)을 구성·운영하여 일반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지원 컨설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1) <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현황(자료: 교육부) >

구분	2023년 양성 결과			2024년 양성 계획			계
	대학(기관) 연계 참여인원	직무/자율연수 참여인원	소계	대학(기관) 연계 참여인원	직무/자율연수 참여인원	소계	
전체	140	447	587	176	414	590	

개정안을 통해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현재 구축되어 있는 행동중재 지원 체계가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지원인력을 특수학교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원활한 행동중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은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련하여 일반학교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²⁾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된 교원 및 인력에 의한 순회교육을 통해서만 행동중재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4월 말 기준 전체 115,610명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70% 이상에 해당하는 85,220명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어 순회교육만으로는 일반학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사례관리 측면에서도 순회교육을 통해서만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
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
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24. 4.) >

(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장애영아	107	-	-	-	363	470
유치원	905	7,841	5,803	2,038	-	8,746
초등학교	10,316	43,967	35,042	8,925	-	54,283
중학교	6,904	18,109	13,778	4,331	-	25,013
고등학교	6,895	15,145	11,185	3,960	-	22,040
전공과	4,900	158	158	-	-	5,058
계	30,027	85,220	65,966	19,254	363	115,61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의 정도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되고 있으므로³⁾,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재학하면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행동중재 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행동중재전문 교사 및 전문인력을 일반학교에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동감하며,

특히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생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행동 중재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동중재 전문교사 및 전문 인력, 행동중재지원팀 등을 통해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의 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에 특수교육교원의 정의와 배치 등에 대한 규정⁴⁾이 이미 존재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동중재전문교사의 정의와 배치근거를 기존의 특수교육교원과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 특수학급에도 행동중재전문교사 배치가 필요하며 행동중재전문교사 양성과정 표준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⁵⁾, 행동중재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보상 방안 등 교사 지원체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⁶⁾,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팀 구성을 의무화하고 명칭을 “행동중재지원단”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⁷⁾,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교원에 의한 순회 지원의 비효율성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과중 등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⁸⁾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6

5)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출의견

6) 대전광역시교육청 제출의견

7) 충청남도교육청 제출의견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출의견